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면세점)



이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목적은 면세점과 납품업자 간에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상품의 납품거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이 표준거래계약서에서는 면세점과 납품업자 사이의 상품 직매입거 래에 있어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거래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거래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하거나 특약으로 달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거래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맞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 더블유코스메틱(이하 "갑"이라 한다)과 MJ화장품(주)(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화장품 직매입거래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서의 작성 목적은 "갑"과 "을" 간 프리미엄 화장품의 직매입거래 ("갑"이 "을"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면세점에서 판매하며, 일정 기간 내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에서 양당사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 [기본워칙]

- ① "갑"과 "을"은 상호이익을 존중하고 이 계약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 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와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화장품법』,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다.
- ③ "을"이 해외 명품 화장품 브랜드를 보유하는 등 "갑"이 "을"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표준거래계약서의 내용을 거래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공정거래 준수 및 동반성장 지원]

- ① "갑"과 "을"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 1. 상대방에게 금품, 향응, 편의 또는 접대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2.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아니하다.
- ② "갑"은 "을"과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을"의 재무건전화, 기술개발 촉진,

- 2 -

근무화경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는데 노력한다.

③ "갑"은 "을"이 국내외 시장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를 상호 혐의하여 실행한다.

제4조 [상품의 납품]

- ① "을"이 "갑"에게 납품하여야 하는 상품의 종류, 수량 및 가격과 상품의 납품장소·납품기일은 [별지]와 같다. 상품의 종류, 수량 및 가격과 납품장소·납품기일은 발주의뢰서, 매입전표, 세금계산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납품기일 및 장소에 차질 없이 상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납품기일에 상품의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 당 기일의 전일까지 "갑"에게 납품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을"은 "갑"에게 『화장품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외무역법』,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상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④ "갑"은 "을"이 상품을 납품하면 제5조제2항의 검수기준에 따라 검수를 마친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이 이 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상품을 지체 없이 수령한다.
- 1. 납품받은 상품이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 2.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 3. 납품받은 상품이 "갑"이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
- 4. 유통 기한이 정해진 화장품으로 해당 기한을 초과하여 납품된 경우
- 5. 기타 "갑"이 정당한 사유로 상품의 수령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⑤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갑"과 협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1.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납품한 상품이 손상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 2. "을"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상품을 납품하는 경우
- ⑥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 1.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2. 과도한 판촉행사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 3. 계약된 가격 인하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제5조 [검수기준 및 품질검사]

- ① "갑"은 납품받는 화장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갑"의 검수기준에 따른 검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갑"은 필요시 "을"에게 샘플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갑"은 상품의 품질, 규격, 법적 기준 등 "을"이 납품하는 상품에 대한 검수기 준을 사전에 "을"에게 서면으로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 ③ "갑"은 "을"이 납품하는 화장품에 대해 품질 및 성분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검사받은 후 검사 결과를 납품 전 "갑"에게 제출해 야 한다.
- ④ 검사비용은 원칙적으로 "을"이 부담하되, "갑"이 요구하는 추가 검사가 기존 품질검사를 초과하는 경우 "갑"이 부담할 수 있다.
- ⑤ 품질검사 결과 "을"이 납품한 상품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갑"은 납품 중지 및 개선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을"이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납품대금 지급 및 감액금지]

- ① "갑"은 납품대금을 상품 입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다. 단. "을"의 서류 미비 등 "을"의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경우 예외로 한다.
- ② "갑"이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공정 거래위원회 고시 지연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 ③ "갑"은 "을"이 납품한 상품의 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상품권 등의 대체 결제를 강요하지 않는다.
- ④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과 "을"이 합의한 서면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 1. 계약된 상품과 다른 상품이 납품된 경우
- 2.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상품이 손상된 경우
- 3. 품질 검사 결과 기준 미달인 경우
- ⑤ "갑"은 "을"과 합의하여 계약서에 따라 지급해야 할 상품 대금에서 "을"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공제 내역을 "을"에게 사전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상품의 반품]

- ①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을"로부터 매입한 화장품 상품을 반품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반품이 가능하다.
- 1. 납품된 상품이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손상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 2. 주문한 상품과 다른 제품이 납품된 경우

- 3. 반품에 따른 손실을 "갑"이 부담하고 "을"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 4. 시즌 한정 상품, 프로모션용 상품 등의 반품이 사전에 합의된 경우
- 5. "을"이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 6. 납품된 상품이 위조품이거나 법적 문제로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 7. 해당 브랜드의 정책에 따라 반품이 이루어지는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을"이 요청하더라도 반품이 불가능하다.
- 1. "갑"이 매장에서 사용하여 가치가 현저히 훼손된 상품
- 2. "갑" 전용 브랜드(PB) 제품으로 타 유통 경로에서 판매가 어려운 상품
- 3. "갑"의 매장 개편 등 내부 사유로 인해 발생한 재고 상품
- ③ 반품 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즉시 발견이 어려운 품질 문제의 경우 혐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 ④ 신선 화장품의 경우, 납품 후 2일 이내에만 반품할 수 있다.
- ⑤ "갑"은 반품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공지하며, 변경 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통지하다.

제8조 [판매장려금]

① "갑"은 화장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을"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명칭	종류	지급목적	지급시기	지급횟수	판매장려금률
판매 인	성과장려	목표 달성	성과 달성	여 9히	초과판매액의
센티브	급	시	후	연 2회	5%

- ② 판매장려금의 결정 및 변경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결정 기준: 판매 실적, 브랜드 협력 여부, 시장 상황 등을 고려

- 2. 결정 절차: 담당자 협의 후 확정
- 3. 변경 사유: 매출 증감, 시장 변동 등
- 4. 변경 절차: 서면 협의 후 반영
- ③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장려금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 을"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9조 [판촉사원 파견 등]

- ① "갑"은 "을"의 판촉사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갑"이 파촉사원의 급여 및 기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2. "을"이 파촉사원 파견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 3. "갑"이 특정한 판매 기술을 가진 판촉사원의 지원을 요청한 경우
- ② "을"은 최대 10명의 범위에서 판촉사원을 파견하며, "갑"은 불필요한 파견을 강요할 수 없다.
- ③ 판촉사원은 "을"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갑"의 운영 방침을 준수해야 하다.
- ④ 판촉사원의 근무 시간과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른다.
- ⑤ 판촉사원과 관련된 비용 분담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⑥ "을 "은 판촉사원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갑 "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⑦ "갑"은 판촉사원 관련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며, 변경 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제10조 [서비스 품질유지]

- ① "갑", "을" 및 "을"이 파견한 판촉사원은 고객이 기대하는 수준 이상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갑"과 "을"은 고객의 정당한 불만 발생 시 보상 및 시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불만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갑"과 "을"은 고객불만 해결 및 재발 방지 비용을 원인과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혐의 후 분담하다.

제11조 [판촉행사 참여 등]

- ①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이하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을"이 일부부담할 경우, "갑"과 "을"은 사전에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파촉행사의 명칭, 성격, 기간
- 2. 판촉 대상 상품의 품목
- 3. 판촉비용 예상 규모 및 사용 내역
- 4. "갑"과 "을"의 예상 경제적 이익 비율
- 5. 판촉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 ② "갑"은 "을"의 의사에 반하여 판촉행사 참여를 강요하지 않으며, 광고 실행을 가제하지 않는다.
- ③ 판촉비용 분담 비율은 예상 이익 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비율로 가정한다.
- ④ "을"의 판촉비용 분담 비율은 최대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금액은 "갑 "이 부담한다.

- ⑤ "을"이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차별화된 판촉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갑"과 협의 하여 비용 분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갑"은 판촉 행사 진행 및 비용 분담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며, 변경 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을"에게 알린다.

제12조 [매장 위치 및 면적 등]

- ① "을"의 점포명, 운영 층, 매장 위치, 면적 및 판촉사원 수는 [별지 2]에 따른다.
- ②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점포 퇴점을 방해하거나 "을"의 의사에 반하여 입점을 강요하는 행위
- 2. 계약 기가 중 "을"의 매장 위치, 면적, 시설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 ③ "갑"과 "을"이 매장 위치 및 인테리어 변경(이하 "설비 변경") 시 다음을 준수 한다.
- 1. 기초 시설 공사 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을"이 자체 사양으로 변경 시 추가 비용은 혐의 후 결정한다.
- 2. "갑"의 매장 개편 또는 리뉴얼로 인한 변경 비용은 "갑"이 부담하나, "을"이 희망하여 변경할 경우 혐의하여 분담한다.
- 3. "갑"은 설비 변경의 구체적 사유를 사전에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4. "을"이 브랜드 컨셉 변경 등 자체 사유로 변경할 경우, 비용 분담 비율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 5. "을"의 설비 변경이 타 입점업체의 영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갑"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 6. 설비 변경 관련 비용을 분담할 경우, 시공은 상호 합의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업체를 통해 진행한다.
- ④ "갑"이 "을"과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매장 위치·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을"이 지출한 설비 비용의 잔여 계약기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매장 이동 기준 등의 사전 통지]

- ① "갑"은 "을"의 매장 위치, 면적, 시설 변경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고, 변경 시에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을"은 "갑"에게 매장 변경 대상 여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여부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 통지해야 한다.

제13조 [기타 비용의 사전 통지]

- ① "갑"은 물류비, 배송비, 광고비 등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을"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그 내역 및 분담 비율, 변경 절차 등을 사전에 "을"이 접근 가능한 매체수단에 공지하거나 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갑"이 제1항의 비용 또는 그 부담 기준을 변경할 경우, "을"에게 사전 통지하고 혐의하여야 한다.
- ③ "갑"이 "을"에게 사전 통지 없이 추가 비용을 부과하거나, 협의 없이 변경한 경우. "을"에게 해당 비용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제14조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 ① "갑"은 부당하게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 1. "을"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공급가격 포함)
- 2. "을"이 다른 사업자의 매장 입점 조건(임차료 포함)
- 3. "을"이 납품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의 원가
- 4. "읔"이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상품의 매출, 판매량 등 매출 정보
- 5. "을"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진행하는 판매촉진행사 관련 정보
- 6. "을"이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접속 정보

- 7. 그 밖에 "을" 또는 "을"의 거래상대방에 관한 제1호~제6호에 준하는 정보
- ② "갑"이 "을"에게 제1항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 1. 요구 목적
- 2. 정보 비밀유지 방법 및 비밀침해 시 손해배상 규정
- 3. 정보 요구일자, 제공일자 및 제공 방법
- 4. 정보 제공 요구가 불가피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③ 제2항의 서면에는 "갑"과 "을"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④ "갑"은 경영정보 요구 시, 요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 [보복조치의 금지]

-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이유로 불리한 계약 조건 변경, 납품 기회 제한, 계약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 첫
-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른 신고
-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서면실태조사 현조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협조

제16조 [각종 불이익 제공 금지 등]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을"의 화장품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거나 요구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2. 특정 브랜드 또는 유통 채널과만 거래하도록 강요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 없이 판촉 물품이나 프로모션 제품 구매를 갔요하는 행위
- 4.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한 "을"의 영업비밀이나 제조·유통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 5. "갑"이 "을"에게 특정 유통벤더를 통한 납품을 강요하는 행위
- 6. "갑"이 "을"의 과실 없이 발생한 재고 손실 금액을 "을"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7. "갑"이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을"의 마케팅·유통 전략에 부당하게 개입 하는 행위

제17조 [손해배상]

- ①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갑"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8조를 위반하여 "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2항에 따라 "을"이 입은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여야 한다. 단, "갑"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지식재산권 등]

- ①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화장품은 제3자가 보유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② 만약 "을"의 화장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제3자로부터 민·형사상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이로 인해 "갑"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상표관련특약]

- ① "을"은 "갑"에게 "을"이 직접 제조하거나 공식적으로 수입한 화장품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제3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을 납품할 수 있다.
- ② "을"은 이 계약에 따라 상품을 납품하면서, 자신이 직접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않은 상품의 상표라벨을 변경하여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을"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고 거래를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 "갑"의 고객 및 관련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 [제조물책임]

- ① "을"이 납품하는 화장품이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으로 인해 "갑"의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해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을 "은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효기간, 성분 안전성, 패키징 손상 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 [권리 · 의무의 양도금지]

- ①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 또는 개별 약정서상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 ② 단, 상품판매대금 채권 등 금전채권의 경우, "갑"에게 사전 서면 통지 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 [통지의무]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1.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 2. 자본구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 4. 그 밖에 "갑"과 "을"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는 계약에 명시된 주소로 서면으로 하며,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3조 [비밀유지]

- ① "갑"과 "을"은 상호 거래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근거한 정부기관의 요청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제1항의 의무는 "갑"과 "을" 사이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3년간 유지된다.

제24조 [계약해지]

-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갑" 또는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되거나, 회생·파산 절차가 신청 또는 개시된 경우
- 2. "갑" 또는 "을"의 주요재산(납품대금 청구채권 포함)이 강제집행되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3. 이 계약에 명시된 브랜드나 거래 품목의 생산이 중단되거나 종료된 경우
- 4. "을"이 납품한 상품이 법령 위반 또는 라이선스 계약 종료로 인해 납품 또는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 5. "갑" 또는 "을"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② "갑" 또는 "을"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해지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이 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 해지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 [상계]

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 계약과 관련하여 해지 시점까지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 대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 [계약의 유효기간 및 갱신]

-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5. 01. 01.부터 2027. 12. 31.까지로 한다.
- ②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갱신거절 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이 계약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 ③ "갑"은 "을"과 "을"의 납품업자 간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 ④ "갑"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계약 만료일로부터 60일 전까지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을 "은 "갑"의 갱신 거절 사유가 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⑥ "갑"은 "을"의 이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혐의를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된다.
- ⑦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1. "갑"이 14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 2. "갑"과 "을"이 30일 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 3. 협의 중 "갑" 또는 "을"이 중단을 선언하거나 합의가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 우

제26조의2 [계약의 갱신 기준 등의 사전 통지]

- ① "갑"은 계약 갱신 거절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 또는 "을"이 접근 가능한 매체를 통해 공지하거나, 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도 즉시 같은 방식으로 "을"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② "을"은 "갑"에게 자신의 매장이 갱신 대상인지 여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 ③ "갑"은 "을"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갱신 대상 여부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27조 [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계약 내용에 대한 의견 차이는 "갑"과 "을"의 합의에 따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 상관례 및 관련 법령을 따른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대규모유통업거 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갑"과 "을"이 조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 해결은 민사

재판에 의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는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지정할 수 있다.

※ 중재를 통한 최종 분쟁 해결을 원할 경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가능함:

③ "갑"과 "을"이 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다음 중재기관에서 중재 판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중재기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해당 중재기관의 중재규칙

제28조 [계약의 효력]

-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계약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다.
- ② 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이 "갑"과 "을" 사이에 합의된 사항이며, 구두 합의는 본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 한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다만, 본 계약서에서 예정된 별도의 서면약정은 이 계약에 우선 적용된다.
- ③ 이 계약의 내용은 "갑"과 "을" 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으며, 해당 변경 및 수정은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효력을 발생한다.

2025년 01월 01일

(갑)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0 (을)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0

상호 : 주식회사 더블유코스메틱 상호 : MJ화장품(주)

대표이사 : 김철수 (인) 대표자 : 박영희 (인)